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9596 판결 [대여금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나3959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2117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기

담당변호사 심형훈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용

변론종결 2024. 6. 14.

판결선고 2024. 8. 9.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2가단121176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22. 6. 13.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피고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4. 접수 제36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더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부분에 관한 추가적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적 판단

가. 변제공탁으로 피고들의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3. 10. 10.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금액(10,000,000원 및 2012. 7. 16.부터 2022. 6. 13.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원에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출급하였다. 이는 가지급금 공탁이 아니므로 변제로서 효력이 있다. 또한, 이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위 공탁을 이유로 변제 항변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대여금 지급의무 및 피고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인용금액을 변제공탁하였더라도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그 금원은 비록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패소한 당사자가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공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지 그 금액 상당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임의로 변제제공을 하였으나 승소한 당사자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여 변제공탁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위 변제공탁으로 인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변제항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소심에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않고, 다만, 위 사유는 이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사유가 될 뿐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3. 10. 1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법원 2023년 금 제3164호로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 전액인 31,426,849원(10,000,000원 및 위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출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경우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피고 B의

대여금채무는 소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을 막고 위 변제공탁의 효력으로 피고 B의 대여금채무의 소멸만을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탁이 변제공탁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제1심판결에 붙은 가집행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위 공탁만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급전지급 채무의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보전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1가단64901호로 피고 B를 상대로는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피고 C를 상대로는 위 대여금채권 및 원고가 피고 B의 보증 하에 소외 H에게 대여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취소 및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B의 보증 하에 소외 H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은 원래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은 부존재하고,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로 소멸하여 결국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이유 없다.

2) 판단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한편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 반면,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기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당연무효라거나 준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이 법원으로서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1).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소연, 판사 김수연

별지

목 록

1. 서울 중랑구 대 299.5㎡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주택 및 점포 사무실
 - 1층 178.45㎡
 - 2층 178.45㎡
 - 3층 133.45㎡
 - 4층 133.45㎡
 - 지하실 138.65㎡(내 1층 면적 중 주차통로 36.123, 4층 용도 사무소) 끝.

1) 다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에 대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보전, 즉 강제집행을 위한 것인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피보전채권 자체가 소멸하여 부존재하므로 원고가 위 결정사항에 따라 말소등기를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설령 원고가 말소등기를 하더라도 원, 피고 사이(원, 피고는 부부이기도 하다)에 다시 매도 및 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